

2020년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 공고

충청남도과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의 지속경영을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27일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1. 신청자격

○ 충남 도내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업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업체
 - 그 밖의 업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 [참조 1]

< 지원 제외대상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참조 2]
- ✓ 대기업 운영의 프랜차이즈 직영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 ✓ 휴·폐업 중인 업체

2. 지원규모

- 200업체(접수 완료된 순서에 따라 순차 지원)

3. 접수기간

- 2020. 3. 27.(금) ~ 11. 30.(월)

※ 지원사업 모집 종료 시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게재 예정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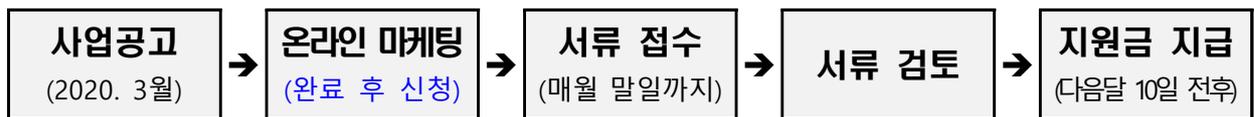
○ 2020년 온라인 마케팅에 지출한 비용 40만원

- 총 40만원 이상(부가세 제외) 온라인 마케팅으로 지출한 소상공인에게 지원
- 2020. 1. 1. 이후 지출한 온라인 마케팅 비용에 대해 지원
- 온라인 마케팅 지원 대상 분야

- ① 키워드(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 등의 검색결과 노출) 및 배너광고(막대형태의 광고)
- ②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페 등) 소셜 마케팅 비용 등
- ③ 온라인 쇼핑몰(옥션, 지마켓, 티몬, 네이버쇼핑 등) 상세페이지제작, 쇼핑몰 상품노출 등
- ④ 중개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직방, 다방 등 소비자-소상공인 연계 플랫폼) 소요비용(광고 서비스 이용요금 등)
- ⑤ 모바일·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단순 도메인 연장은 지원 불가
- ⑥ 온라인 홍보기사

※ 지원 대상 분야 외의 온라인 마케팅 비용은 지원 불가

5. 지원절차



6. 지원금 지급 및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소상공인이 먼저 지출한 온라인 마케팅 비용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마케팅 비용지출을 완료한 후 사업을 신청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은 업체별로 연 1회에 한해 지원됨
- 제출서류 검토 후 누락 없이 접수된 시점을 접수일로 함
- 접수가 완료된 업체는 개별 안내문자 발송
-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 익월 10일 전후 지원금 지급
※ 단, 3월 접수 업체는 5월 중 지급 예정
- 지원금 지급은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지급

7.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일체 우편 및 방문, 이메일 제출
- 접수처
 - 주소: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충남경제진흥원 401호
소상공인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sbizcenter@naver.com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1	업체 기본 정보	지원금 신청서	-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3	신고 사업자 확인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
4	소상공인 여부 확인	①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www.4insure.or.kr)	고용인원 1명 이상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www.nhis.or.kr)	고용인원 없는 경우
5	온라인 마케팅 분야 지원 적합여부 확인	온라인 마케팅 증빙자료 ① 업체·상품 등의 홍보물 게재된 페이지 이미지 ② 모바일 홈페이지/SNS페이지/쇼핑몰 등의 이미지 ③ 기타 온라인 마케팅 활동 증빙 이미지 등 ※ 키워드/쇼핑몰/중개플랫폼 등 신청대상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히 제출(성명, 업체명 등이 표기된 마이페이지 등)	홍보 업체를 이용한 경우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추가 제출
6	지출 내역 확인	지출비용 증빙자료 ① 전자세금계산서 ② 결제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7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대표자명의 혹은 법인명의)	개인사업자(대표자명의) 법인사업자(법인명의)
8	지원 보완 및 개선	만족도 설문조사	-

※ 필요시 위 제출서류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를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 시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확인 또는 신청 상의 기재착오,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지원사업 신청자의 귀책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내용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증빙자료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기타 충남경제진흥원의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보부상콜센터: ☎ 041-424-4000
-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sbiz.cepa.or.kr>

<붙임>

1.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3. 만족도 설문지

【참조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9.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²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